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84 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이개호·김현정·박희승

김영배 • 박수현 • 이언주

어기구 • 이정문 • 박지원

위성곤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.

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,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.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,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.

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,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2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소독업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
- 1.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- 2.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- 3.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·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- 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- 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양도
- 3. 「국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 차
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2조의2(소독업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1.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상속인 2.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.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나 합병으로 전체한다. 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제인 다른 양도이 보를 이 나를 양도이 되었다면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양도이 보를 가 된 생각이 나를 압류재산의 매각이 되었다면 된 제3호가이 제3호부터 제3호가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

제59조(영업정지 등) ① 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독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 하는 절차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 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 여야 한다.

네59조(영업정지 등) ①
<u>,</u>
1. 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- 2. ~ 5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0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
  - 9. (생략)

- 1의2.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<u>경우</u>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- \_\_\_\_\_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8의2.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9. (현행과 같음)